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 - 234호

2025년도 K-스타트업 센터 창업기업 모집 공고

K-스타트업 센터(이하 KSC) 사업 참여기업의 해외 창업생태계에 안착을 위한 글로벌 유망 창업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K-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실명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사전 실명등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접수 전 필히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① **실명등록 대상** : 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 확인 불가능자
② **실명등록 경로** : www.siren24.com (☏1577-1006)
* 실명 등록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K-Startup 누리집 - 고객센터 - 온라인매뉴얼 - 일반매뉴얼 - K-Startup 창업기업 실명등록 매뉴얼 참고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K-스타트업 센터(KSC) 프로그램을 통한 해외 시장 안착 등 글로벌 스케일업 구현

□ **지원대상** : 투자유치(국내·외) 또는 진출지역의 매출(수출)실적이 있는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단, 신산업창업분야 중소기업은 업력 10년이내)

□ **지원내용** : 해외 진출 프로그램 및 자금(40백만원 내외) 지원

□ **협약기간** : '25. 06. 01. ~ 11. 30(예정)

□ **선정규모** : 총 30개사 내외

< KSC 프로그램 신청 유형 >

구 분	7주 (국가(AC))	7주 (국가(AC))
트랙 1	미국 뉴욕(Elpis Laps)	일본 오사카(Plug and play Japan)
트랙 2	UAE 두바이(Astrolabs)	미국 뉴욕(Elpis Laps)
트랙 3	일본 오사카(Plug and play Japan)	UAE 두바이(Astrolabs)

* 선정기업은 반드시 각 트랙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함(2개국 프로그램 필수)

2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중, **투자를 받은**(국내·외) **이력**이 있거나 **진출지역의 매출(수출)실적**이 있는 창업기업

*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유망 신산업 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신산업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업력 10년이내**까지 신청가능

< 신산업 창업 분야 >

①	인공지능	⑩	자율주행차	⑲	스마트홈
②	빅데이터	⑪	전기수소차	⑳	신재생에너지
③	5G+	⑫	바이오	㉑	이차전지
④	블록체인	⑬	의료기기	㉒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⑤	서비스플랫폼	⑭	기능성 식품	㉓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⑥	실감형콘텐츠	⑮	드론·개인이동수단	㉔	우주
⑦	지능형 로봇	⑯	미래형 선박	㉕	차세대 원전
⑧	스마트 제조	⑰	재난/안전	㉖	양자
⑨	시스템반도체	⑱	스마트시티	㉗	사이버 보안

▶ **신청가능 업력**
- **(업력 7년 이내) 2018년 4월 9일 이후 창업한 기업**
- **(업력 10년 이내) 2015년 4월 9일 이후 창업한 기업 (신사업창업분야 해당시)**

> **※ 창업일 기준**
>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1항 및 2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

▶ 공동대표 또는 각자 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 자격 적합 여부를 결정(**[참고1] 「창업여부 기준표」**를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 여부 확인)

- **(투자 증빙)** 개인투자자를 제외한 투자사, 투자금, 계약일 등이 포함된 투자계약서 제출(창투사, 신기사,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PEF, 엔젤투자조합 등)

- **(매출 증빙)** 신청 3개국(미국, 일본, UAE) 또는 인접 국가 매출(수출) 실적 증빙 제출(아시아, 중동, 아메리카로 구분하며 국내 매출은 제외)

□ 신청 제외 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①조건 예외 대상(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 지원'을 받은 자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②조건 예외 대상(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1. 국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④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창업 지원사업' 중 동시수행 불가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동시수행 불가 사업) 관광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글로벌창업사관학교, AI전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세부 사업 내용은 [별첨 3] 참조)**

** 참여사업 회계연도가 다를 경우, 타 수행 사업의 협약 잔여기간의 정도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⑤ '19~'24년 동 사업 참여자(기업)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⑦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 (기업)

⑧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 (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⑨ 동 사업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총괄책임자,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인 자(기업)

⑩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기업)

⑪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⑫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의무 및 역할

○ 선정자는「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선정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정부 지원 사업비를 지급받아 정부 지원 사업비를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선정기업은 현지 프로그램에 대표자 참여를 권장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참가가 어려울 경우 최소 1인 이상의 직원이 반드시 현지 체류 및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며, 해외출장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

○ 프로그램 참가자는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현지에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책임은 선정기업과 참가자에게 귀속됨

* 현지 법규 준수, 비상 상황 등에 대비한 연락 체계 유지, 현지 질병 등에 대비하여 개인의 위생관리, 도난 등에 대한 주의 등 프로그램 외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건사고 등

○ 현지 프로그램 참가자는 창업기업 대표자 또는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소속 임직원으로 영어(현지어)에 능통하여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함

* 현지 프로그램 참가자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변경 혹은 일시적으로 현지 체류가 불가할 경우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 액셀러레이터가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 종료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법인의 경우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나, 사업비의 유용·횡령·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선정자)에게 있으며 지침 및 기준 등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에 자기부담사업비(현금)를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이 있을 경우 해당 증빙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함

3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 해외 진출 프로그램 및 자금(40백만원 내외) 지원

○ **해외 진출 프로그램** : 국가별 글로벌 액셀러레이터를 통한 협력 파트너사 발굴, 투자자 매칭 등 현지 진출 밀착지원

○ **해외 진출자금** : 프로그램 참가목적의 여비, 인건비에 한해 사용 가능한 해외 진출자금 지원(선정 후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참조)

<table>
<tr><th>구분</th><th>세부 지원 내용</th></tr>
<tr><td>해외 진출 프로그램</td><td>

□ 해외 시장 진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1:1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20주간 운영

○ **(20주)** 국내 3주 + 온라인 3주 + 현지 14주(2개국 각 7주간)

○ **(KPI Week)** 참가기업-액셀러레이터 간 면담을 통해 프로그램 참가 목표 및 세부 활동 계획 등 현지 지출 목표 수립·확정

○ **(진출 준비)**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창업기업과 해외 파트너사 등을 매칭하고, 멘토링을 통해 현지 진출전략 점검·수정

○ **(현지 프로그램)** KPI 달성을 위한 현지 자체 계획 수립·실행

○ **(필수 사항)** 참여기업은 선정된 2개국(각 7주) 현지 프로그램 참여해야 함

<table>
<tr><th>구 분</th><th>7주 (국가(AC))</th><th>7주 (국가(AC))</th></tr>
<tr><td>트랙 1</td><td>미국 뉴욕(Elpis Laps)</td><td>일본 오사카(Plug and play Japan)</td></tr>
<tr><td>트랙 2</td><td>UAE 두바이(Astrolabs)</td><td>미국 뉴욕(Elpis Laps)</td></tr>
<tr><td>트랙 3</td><td>일본 오사카(Plug and play Japan)</td><td>UAE 두바이(Astrolabs)</td></tr>
</table>

○ **(성과발표회)** KSC 운영 국가 AC, 선정기업 성과 발표 및 네트워킹 등

</td></tr>
</table>

<table>
<tr><th>구분</th><th>세부 지원 내용</th></tr>
<tr><td>해외
진출
지원금</td><td>

○ **해외 진출 시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지원**

○ **정부지원사업비 40백만원 내외 지원**

< 총사업비 구성 >

<table>
<tr><th rowspan="2">정부지원사업비</th><th colspan="2">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
(총사업비 30% 이상)</th></tr>
<tr><th>현금</th><th>현물</th></tr>
<tr><td>총사업비 70% 이하</td><td>총사업비 10% 이상</td><td>총사업비 20% 이하</td></tr>
</table>

< 사업비 구성(예시) >

<table>
<tr><th rowspan="2">총사업비</th><th rowspan="2">정부지원사업비</th><th colspan="2">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th></tr>
<tr><th>현금</th><th>현물</th></tr>
<tr><td>5,715만원</td><td>4,000만원</td><td>573만원</td><td>1,142만원</td></tr>
<tr><td>100%</td><td>70%</td><td>10%</td><td>20%</td></tr>
</table>

* **(현물)**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존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사업비 비목(예시) >

<table>
<tr><th>비목</th><th>비목 정의</th></tr>
<tr><td>인건비</td><td>- 소속 직원이 해외 진출(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하는 급여

* 대표자 인건비는 현금 지급 불가
** 인건비는 정부지원사업비 50%까지 계상 가능

(예시) 정부지원사업비가 40백만원인 경우,
→ 인건비는 20백만원 + 자기부담사업비(현물) 계상 : 가능
→ 인건비는 20백만원 + 자기부담사업비(현금) 계상 : 불가</td></tr>
<tr><td>지급수수료</td><td>- 회계 감사비 및 사업비 모니터링 비용 등
- 현지 프로그램 이수를 위한 비자발급비, 해외전시회 참가비, 해외송금 수수료, 해외법인설립 등</td></tr>
<tr><td>여비</td><td>- 대표자와 소속 임직원이 사업계획서상의 해외 진출을 준비하기 위해 사업장 소재지를 벗어나 타지역(국내) 또는 타국가(해외)로의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td></tr>
</table>

○ <u>사업비 사용 및 집행은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과 창업사업화통합지침에 따름</u>

</td></tr>
</table>

4 신청 및 접수

□ 신청 기한 : 공고일로부터 ~ 4.30.(수), 15시까지

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신청·접수 마감일 15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며, 15시 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1단계 이상 저장 과제)에 한하여 접수마감일 17시까지 작성항목 수정, 사업계획서 추가 업로드 등이 허용됨. 마감시간 15시 후에는 새롭게 신청접수 시작은 불가

②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됨

③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 삭제 불가

□ 신청방법

○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① 신청·접수 시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인증 등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사전**에 **홈페이지 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

* 기업인증 : ① 공동인증서(기업용) 또는 ②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기업 실명 인증 후 신청 가능하므로 사전인증 필수(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개인인증 :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개인에 따라 3일 내외 소요될 수 있음), 특히 외국인, 미성년 등은 사전인증 필수

② 사업 신청은 신청(지원) 제외 대상 여부 검토를 위해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신청할 경우 탈락 처리

③ 신청 시 사업계획서 상 신청국가와 시스템 접수 상 신청국가가 상이할 경우, K-Startup 홈페이지 **시스템 접수 기준으로 진행**

□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분	주의사항	제출방식
① 사업계획서	필수	양식 작성 후 첨부	**온라인시스템 업로드** * 업로드 가능 용량은 **30MB**로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
② 신청자격 증빙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투자/매출 실적 증빙, 창업기업 확인 증빙	
③ 영문 인터뷰 발표 자료(PPT/PDF)	추후 제출	서류평가 통과기업에 한하여 별도 안내·제출	

* 사업계획서는 게시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 양식의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 서류 및 증빙서류 누락 시 신청접수 대상에서 제외

5 평가 및 선정

□ 가점대상

< 가점 대상 (중복 가점 불가하며 서류 평가 시 가점 1점 적용) >

▶ '24년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최종평가 "최우수" 창업기업
▶ '24년 글로벌 기업 협업 최종평가 "최우수" 창업기업
▶ 도전! K-스타트업 2024 왕중왕전 진출·수상팀
▶ '25년 CES K-스타트업 통합관 멘토링 지원기업

* 해당 가점은 창업진흥원에서 최종명단 확인을 통해 가점 부여

□ 평가절차

○ 평가는 ①요건검토→②서류평가→③발표평가 순으로 진행로 진행하며, 단계별 평가점수는 해당 단계만 적용(서류평가, 발표평가 점수는 개별 산정)

< 창업기업 선정 절차(안) >

①요건검토	②서류평가	③발표평가	④최종선정
요건검토 및 서류평가 대상 확정	사업계획서 토대로 서류 평가	발표평가 지표에 따라 평가	최종선정자 및 지원금액 심의
주관기관	해당 액셀러레이터	해당 액셀러레이터	창업진흥원

요건검토는 상시 진행(창업진흥원·주관기관)하며, 미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예정

* 상기 절차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단계별 평가 이후 결과 안내 예정

□ 평가방법

① **(요건 검토)** 신청자격 및 신청제외대상 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필수 요건을 만족하지 않을 시 평가·선정대상에서 제외

② **(서류 평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세부항목 평가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자(최종 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 선정

* 서류평가 대상자가 2배수 이내일 경우 서류평가 생략 후 발표평가 진행

③ **(발표평가(인터뷰))** 현지 액셀러레이터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영어 인터뷰를 진행하고 프로그램 참가기업을 선정

□ 평가지표

○ 서류 및 발표평가는 해외 액셀러레이터의 자체 평가지표에 따름

< 창업기업 선정 평가지표(안) >

구분	평가 세부내용
Quality of the Team	1-1. Does this team have the right set of skills to succeed in the program (Entrepreneurial mindset, English Proficiency, Skills & resources within the company)
	1-2. Does this team have the sufficient motivation and ambition to leverage the program?
	1-3. Have the founders demonstrated that they can execute at high speed?
Quality of the Solution/ Product	2-1. Does this project address a clear and identified market?
	2-2. Would a VC or BA invest in this project?
Market Opportunity	3-1. Does this project address current or expected regulation affecting the business opportunity?
	3-2. Is the projected sales volume going to be excellent?
	3-3. Does this project have a viable business model?
Future Projections	4-1. Does the project have the necessary financing in place for the next 12 months?
	4-2. Is the solution ready to be commercialized?

* 상기 창업기업 선정 평가지표(안)은 평가 시 변경·운영 될 수 있음

□ 최종선정

○ 지원 규모 내 최종 지원기업 선정 및 창업기업별 지원 금액 최종 확정

○ 평가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주관기관 혹은 창업진흥원이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 선정평가 결과 창업기업 역량이 본 사업 운영 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 규모 이하로 선발할 수 있음

□ 사업 운영일정(안)

공 고	창업기업 신청・접수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중소벤처기업부	K-Startup 홈페이지 시스템 문의 : **국번없이 1357**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25.4.8.(화)	'25.4.8.(화) ~ 4.30.(수)	~'25.5월 중

협약체결	창업기업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지원대상 선정 공지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창업기업(개인, 법인)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요청일 다음날로부터 3일 이내)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25.6월	~'25.5월 중	~'25.5월 중

사업수행	중간점검	최종보고 및 점검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기업, 주관기관
'25.6월 ~ 11월	'25.9월	'25.12월

* 상기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유의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창업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① 동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 할 수 있습니다.

○ 동 사업 신청은 해당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할 수 있음

* 'K-Startup'(https://www.k-startup.go.kr) 상의 동 사업 신청자, 해당 기업의 대표자,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상 대표자는 일치하여야 함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 또는 선정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등)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및 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짐

*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평가대상 제외, 선정취소, 참여 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선정 완료 후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중 1인이 동 사업의 협약을 체결할 경우, 향후 동 사업 협약체결자 외의 대표자도 중기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 신청·접수 제한 시간까지 사업 신청 완료한 자만 평가 참여 가능

○ 동 사업 신청자는 2025년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평가위원 참여 불가

□ 평가 중 유의사항

○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함

○ 전 평가 과정에서 신청하는 창업기업대표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단, 부득이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주관기관 승인하에 4대보험가입 직원에 한하여 참여 가능

○ 신청자는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로부터 안내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신청가능

○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표평가(인터뷰)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신청자격 중 창업기업 확인을 위해 유효기간 내 '창업기업확인서' 제출 혹은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

* 업력 및 창업기업 확인 기준 관련 서류(총 사업자등록내역, 내역 상 '계속' 중인 모든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창업여부 확인서(창업기업용), 주주명부 등)

□ 선정 후 유의사항

○ 최종 선정 통보된 예비선정자(기업)는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요청일* 다음 영업일로부터 3일 이내(마지막 날 17시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K-스타트업 센터(KSC) 프로그램」'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자의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개별 발송 예정

○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확약서 제출 이전에 본 공고에서 명시한 동시수행 불가사업(별첨3 참조)의 선정 절차(확약서 제출 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제외' 처리됨

- 단, 본 공고에서 명시한 동시수행 불가사업(별첨 3 참조)에 이미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여 협약체결 예정인 사업이 있는 경우, 최초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협약체결(수행) 가능

○ 제출한 협약체결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요건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사업비 환수 및 참여 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정부지원사업비은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수 있으며 '창업사업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총 사업비가 관리·운영됨

○ 동 사업의 중간(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동 사업 전문기관 또는 주관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창업사업화 통합지침에 의거하여 협약취소 등 제재가 될 수 있음

○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전담·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 협약기간 중 대표자가 구속되어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선정취소 또는 협약해약,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 선정기업은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계좌(사업비계좌) 개설 필수 및 창업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회계처리)이 가능하여야 함

* 지정 은행의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7 문의처

○ **(시스템 문의)** 국번없이 1357

○ **(사업문의)** 주관기관(펜벤처스) 대표번호 : 02-6956-2043

구분	국가	연락처
트랙 1	미국(뉴욕) - 일본(오사카)	02-6956-2717
트랙 2	UAE(두바이) - 미국(뉴욕)	02-6956-2718
트랙 3	일본(오사카) - UAE(두바이)	02-6956-2719

별첨 1 창업여부 기준표

<table>
<tr><th>신청기업구분</th><th colspan="3">상세 구분</th><th>창업여부</th></tr>
<tr><td rowspan="10">개인기업</td><td colspan="3">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 (또는 7년) 이내</td><td>창업 기본요건</td></tr>
<tr><td rowspan="2">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td><td colspan="2">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td><td>창업아님</td></tr>
<tr><td colspan="2">이종</td><td>창 업</td></tr>
<tr><td>기존 개인사업자 유지</td><td colspan="2">-</td><td>창업아님</td></tr>
<tr><td rowspan="5">기존 개인사업자 폐업</td><td>이종창업</td><td>-</td><td>창 업</td></tr>
<tr><td rowspan="4">동종창업</td><td>폐업 3년 초과</td><td>창 업</td></tr>
<tr><td>폐업 3년 까지</td><td>창업아님</td></tr>
<tr><td>부도/파산 – 2년 초과</td><td>창 업</td></tr>
<tr><td>부도/파산 – 2년 까지</td><td>창업아님</td></tr>
<tr><td>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td><td colspan="2">-</td><td>창 업</td></tr>
<tr><td rowspan="13">법인기업</td><td colspan="3">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 (또는 7년) 이내</td><td>창업 기본요건</td></tr>
<tr><td rowspan="6">기존 개인사업자 폐업</td><td>이종창업</td><td>-</td><td>창 업</td></tr>
<tr><td rowspan="4">동종창업</td><td>폐업 3년 초과</td><td>창 업</td></tr>
<tr><td>폐업 3년 까지</td><td>창업아님</td></tr>
<tr><td>부도/파산 – 2년 초과</td><td>창 업</td></tr>
<tr><td>부도/파산 – 2년 까지</td><td>창업아님</td></tr>
<tr><td>동종전환</td><td>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td><td>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td></tr>
<tr><td rowspan="3">기존 개인사업자 유지</td><td>이종창업</td><td>-</td><td>창 업</td></tr>
<tr><td rowspan="2">동종창업</td><td>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td><td>창업아님</td></tr>
<tr><td>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td><td>창 업</td></tr>
<tr><td>자회사 여부</td><td colspan="2">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td><td>창업아님</td></tr>
<tr><td>과점주주 여부</td><td colspan="2">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td><td>창업아님</td></tr>
<tr><td rowspan="2">회사형태 변경</td><td colspan="2">동종유지</td><td>창업아님</td></tr>
<tr><td colspan="2">이종</td><td>창 업</td></tr>
</table>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①2020.10.8.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시행령 제31108호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 "개인사업자 설립일이 '20.10.8. 이전이면서,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판단

②영 시행(2022.6.29.)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별첨 2 지원 제외 대상 업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카지노 운영업	91242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5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2 1항 및 금융위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의거,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거래 제한에 따라, 해당 업태를 영위하는 자(기업)**

연번	업태명
1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2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를 이용한 시스템 통합구축 서비스 자문, 개발 및 판매
3	가상화폐 거래소업
4	가상화폐 개발업
5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6	가상자산 취급업
7	가상자산의 교환, 이전, 매매업
8	암호화폐 공개(ICO) 관련한 컨설팅 및 전문서비스업

* 단, 가상자산사업자 중 금융정보분석원 신고를 통해 영업이 가능한 사업자는 지원 가능
** 기준 업태는 추가·변경될 수 있음

별첨 3	동시수행 불가 사업목록

연번	창업지원사업명	소관 부처(기관)
글로벌		
1	・관광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2	・창업성공패키지(글로벌창업사관학교)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	・글로벌스타트업육성(글로벌액셀러레이팅)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4	・2025년 AI 전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별첨4	국가별 액셀러레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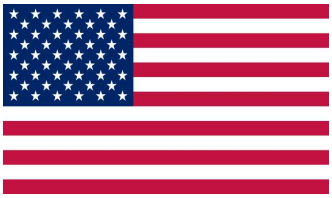

Elpis Labs

기 관 개 요			
기관명	Elpis Labs	**소재지**	뉴욕
홈페이지	www.elpislabs.com	**설립시기**	2014년
설립목적	· Elpis Labs는 잠재력이 높은 기술 및 제품 스타트업이 시장에 접근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미국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설계 ·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자금 조달, 시장 진입 및 전략적 파트너십에 대한 구조화된 접근 방식을 제공하여 미국 확장 여정에서 국제 스타트업을 지원		
주요연혁	· 2014년, 벤처캐피털(VC) 펀드 조성 및 첫 번째 투자 진행 · 2015년, 뉴욕시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운영 시작 · 2019년, 정부 지원 이니셔티브 대상 최초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2020년, 기업 혁신 프로그램으로 사업 영역 확대 · 2024년, 제5차 이탈리아 무역청 글로벌 스타트업 프로그램 뉴욕 개최		

사 업 개 요	
주요내용	· Elpis Labs는 뉴욕에 본사를 둔 혁신 및 액셀러레이션 전문 기관으로, **국제 창업자 지원에 특화**되어 있음. **10년 이상의 운영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구조화된 연착륙 및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260명 이상의 창업자**를 지원한 바 있음. **업무 및 중점 영역 :** · 미국 시장 진출, 자금 조달, 기업 파트너십을 통한 스타트업 성장 지원 · 법률, 재무, 운영 측면의 전문적 지침 제공을 통한 연착륙 경험 촉진 · 투자자, 업계 리더, 전문 고문과의 멘토링 및 네트워킹 기회 제공 **실적 :** · 20,0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글로벌 VC 펀드 심사 과정 참여 · 액셀러레이터 및 VC 펀드를 포함한 300개 이상의 스타트업 생태계 파트너 보유 · Sony Semiconductors, 이탈리아 무역청, ProChile 등과의 기업 지원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운영 경험 · 참여 스타트업의 약 20%가 후속 투자 유치

주요 네트워크	**투자자 :** · Salesforce Ventures, Nvidia Ventures, Visa Garage, Deutsche Bank Ventures, JetBlue Ventures, Highmark Ventures, Morgan Stanley, Verizon Ventures 등 주요 글로벌 투자사 참여 **업계 전문가 및 자문가 :** · 기술, 핀테크, 모빌리티, 엔터프라이즈 SaaS 분야의 미국 내 스타트업 자문가, 엔젤 투자자 및 기업 임원으로 구성된 전문 네트워크 보유 **기업 및 전략적 파트너 :** · IBM, Novartis, BMW, Japanese Airline Ventures, Driscoll's, Cencosud Ventures, Bank of America 등 주요 글로벌 기업 및 전략적 파트너와 협력 **정부 및 기관 파트너 :** · 이탈리아 무역청(ITA), ProChile, 우즈베키스탄 농업부, 한국·아제르바이잔·칠레의 혁신 기관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주요 프로그램	**<u>2025 프로그램 운영 요약</u>** **프로그램 구조 :** Elpis Labs는 KSC 참여 스타트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14주간의 현지 프로그램 및 3주간의 온라인 프로그램을 기획함 · **1단계: 온라인 준비 (3주)** – 법률, 규제, 기금 조달 워크숍 진행 · **2단계: 현지 프로그램 진행 (14주)** – 실습 중심 멘토링, 네트워킹, 투자자 연결 지원 · **3단계: 데모데이 및 현지 박람회 참여 지원** – 투자자 대상 발표 및 전략적 파트너십 매칭 진행, 비즈니스 파트너 네트워크 구축 지원 **맞춤형 지원 내용 :** · 어드바이저 및 시장 전문가와의 주당 최대 8시간 맞춤형 1:1 코칭 제공 · 주요 투자자 및 기업 파트너와의 네트워킹 이벤트 및 피치 콘테스트 운영 · 미국 법인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법률, 은행, 세무 자문 서비스 지원 · 현지 시장 통합 및 시장 검증을 위한 비즈니스 개발 워크숍 진행 · 미국 기업과의 파트너십 촉진을 위한 기업 파일럿 프로그램 제공 · 투자자 매칭 및 현지 VC·엔젤 투자자와의 연결 지원 **예상 성과 :** · **자금 조달 성공** : 미국 VC 및 엔젤 투자자 대상 투자 유치 기회 확보 · **시장 확장** : 미국 내 파일럿 프로젝트 및 PoC(개념 증명) 계약 체결 · **전략적 파트너십** : 장기적 성장과 확장성 강화를 위한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연계

ASTROLABS

기 관 개 요			
기관명	ASTROLABS	**소재지**	두바이
홈페이지	https://astrolabs.com	**설립시기**	2013년
설립목적	걸프 지역(GCC)에서 기업의 시장 확장을 지원하고,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비즈니스 확장 플랫폼		
주요연혁	· 2013년, AstroLabs 설립 · 2014 ~ 2017년, UAE 및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초기 사업 확장 · 2018년, 100개 이상의 기업을 사우디 시장에 성공적으로 확장 · 2019 ~ 2021년,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에 전용 오피스 및 코워킹 스페이스 구축 · 2022년, 1,700개 이상의 기업을 지원하고, 10,000명 이상의 비즈니스 리더와 네트워크 구축 · 2023년, 기술, 건설, 금융, 지속가능성 등 주요 산업에서 글로벌 기업의 시장 확장을 적극 지원		

사 업 개 요	
주요내용	· 10년 이상 중동 및 신흥 시장에서 기업 확장 지원 · 사우디 및 UAE에서 1,700개 이상의 기업의 시장 진출 및 성장 가속화 · 50개국, 37개 산업에서 700개 이상의 기업을 사우디 시장에 진출 · 120명 이상의 전문가 팀이 기업 설립, 규제 준수, 비자, 네트워크 구축 등 종합 지원 ·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에서 민간 및 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액셀러레이팅 및 경제 발전 프로젝트 운영 · DMCC 운영: 구글이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업무제휴를 맺고 있는 기술 허브로, 약 50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입주하여 중동에 진출해 있음 · 100개사 이상의 스타트업을 수용할 수 있는 자체 인큐베이팅 공간을 보유하고 있으며, 협력 스타트업 대상 저렴한 임대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음 · 종합적인 비즈니스 설립 프로세스: 라이선싱, 등록, 비자 발급부터 은행 계좌 개설까지 전반적인 지원을 제공 · 인도, 러시아, 파키스탄, 모로코, 터키 등 전세계의 각종 스타트업 지원 기관 및 대중견 기업/VC와의 협력을 맺으며 중동의 허브로서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기업을 UAE로 유치하고 있음

주요 네트워크	**· 투자자 네트워크** -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 Public Investment Fund) - UAE Mubadala Investment Company - 걸프 지역 벤처캐피털(VC) 및 Private Equity Firm (BECO Capital, STV, Raed Ventures 등) **· 산업별 전문가 및 컨설팅 파트너** - 사우디 및 UAE 내 글로벌 컨설팅 펌 (PwC, McKinsey, BCG 등)과 협력하여 기업 성장 전략 지원 - 산업별 글로벌 기업 및 지역 스타트업과의 협업 기회 제공 (테크, 핀테크,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등) **· 정부 및 공공기관 협력 네트워크** - Saudi Ministry of Investment (MISA, 사우디 투자부) - Dubai Chamber of Commerce (두바이 상공회의소) - Saudi Vision 2030 프로젝트와 연계한 스타트업 및 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 Dubai Future Foundation - 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DIFC) Innovation Hub - Dubai SME 및 Hub71 - Emirates Angels Investors Association 외
주요 프로그램	**· Market Expansion Accelerator (시장 확장 액셀러레이터)** - 사우디 및 UAE 시장 진입을 원하는 글로벌 기업 대상 맞춤형 액셀러레이션 제공 - 현지 규제, 법률, 세금, 운영 최적화 전략 지원 **· Investment Readiness Program (투자 준비 프로그램)** - 사우디 및 UAE 투자자 대상 IR 피칭 기회 제공 (PIF, STV, Mubadala 등과 네트워킹) - 투자 유치를 위한 재무 구조 개선 및 피칭 전략 멘토링 - 국부펀드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모의 IR 등 **· Corporate Innovation & PoC Program (대기업 협업 및 PoC 프로그램)** - 사우디 및 UAE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젝트 운영 - PoC(개념 증명) 및 파트너십 연계를 통한 글로벌 시장 확장 지원 **· Co-Working & Private Office Support (공동 업무 공간 및 법인 설립 지원)** - AstroLabs가 운영하는 사우디 및 UAE 코워킹 스페이스 제공 - 비자, 법인 설립, 규제 준수 및 시장 확장 지원

Plug and Play Japan

PLUGANDPLAY JAPAN

기 관 개 요			
기관명	Plug and Play Japan	**소재지**	일본
홈페이지	japan.plugandplaytechcenter.com	**설립시기**	2017년 7월 14일
설립목적	Plug and Play Japan은 세계적인 액셀러레이터이자 벤처캐피털인 Plug and Play의 일본 현지 법인으로,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글로벌 혁신 플랫폼임.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운영, 스타트업 투자 및 벤처캐피털(VC) 활동을 통해 전 세계 유망 스타트업과 주요 기업 파트너를 지원하고 있음		
주요연혁	· 2017년, Plug and Play Japan 설립, 1000개 이상 스타트업 지원 및 40개이상 기업 파트너 지원 · 2020년, Plug and Play OSAKA 설립, 오사카지역 내 기업 및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 2021년, 스마트시티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공식 운영 시작 · 2022년, 간사이 지역의 대기업 지자체와 협업 확대 · 2023년, 오사카 및 간사이 지역 외에 일본 전역으로 프로그램 확장, PoC 및 파트너십 지원 · 2024년,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2025 준비를 위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본격 추진 Plug and Play Japan은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글로벌 혁신 플랫폼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의 40개 이상 선도 기업이 공식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음. 주요 추진 분야는 ▲혁신 창출을 위한 기업 파트너 지원 ▲다양한 산업 분야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운영 ▲스타트업 투자 ▲일본 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스타트업의 해외 사업 확대 지원 등임. 글로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일본 및 해외 스타트업이 업계 선도 기업과 공동 창조 및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함.		

사 업 개 요	
주요내용	Plug and Play Japan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 파트너와 일본 및 해외 스타트업을 연결하여 협업의 기회를 발굴하고 우수한 스타트업을 집중적으로 보육하는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운영 본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파트너는 혁신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기술 및 서비스를 보유한 스타트업과 연결되며, 스타트업은 주요 기업과 협업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음 이를 통해 참여 기업과 스타트업은 혁신 기술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유망 스타트업과의 네트워킹 및 신규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

주요 네트워크	**· 투자자 네트워크** - 일본 벤처캐피털(VC): JAFCO, Globis Capital Partners, SBI Investment 등 - 글로벌 VC 및 CVC(대기업 벤처캐피털): SoftBank Vision Fund, Mitsubishi UFJ Capital, Toyota Ventures 등 **· 산업별 전문가 및 컨설턴트** - 스마트 시티 & 모빌리티 분야: Hitachi, Panasonic, NTT Group, JR East 등 - 헬스케어 & 바이오테크 분야: Takeda, Shionogi, Astellas Pharma 등 - 환경 및 지속가능성 분야: Mitsubishi Chemical, Sumitomo Corporation, Marubeni 등 **· 오사카 지역 대중견기업** - 전기, 카지마 건설 등, SuperHotel, Arkray, Yamamoto Kogaku, Shin Nippon Biomedical Laboratories, RP Topla, Elecom 등 **· 학계** - 오사카대학, 오사카 도립대학, 교토대학, 고베대학 **· 정부 및 공공기관 협력 네트워크** - Osaka Prefectural Government (오사카부 정부) & Osaka Chamber of Commerce (오사카 상공회의소) - JETRO (일본무역진흥기구),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일본 경제산업성), Osaka Innovation Hub, QUINTBRIDGE, MUIC Kansai, METI Kansai(경제산업성 간사이국), Kansai Economic Federation, Kansai Association of Corporate Executives, Umekita Future Innovation Organization(U-FINO) 등 -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2025 조직위원회
주요 프로그램	**<u>2025 프로그램 운영 요약</u>** **프로그램 구조** **총 14주간 운영** **· 3주 온라인 사전 프로그램 :** 근무시간 내 진행, 멘토링 준비 과정 포함 **· 4주 현장 방문 프로그램 :** - 스타트업별 온보딩 진행 - 스타트업별 3회 멘토링 제공 - 스타트업별 5회 비즈니스 미팅 준비 - 배치별 데모데이 운영 - 선발 스타트업 대상 오사카 EXPO2025 진출 지원 - 스타트업 업무 공간 및 오피스 아워 제공 **· 맞춤형 지원 및 커스터마이징** - 프로그램 시작 전 입학 인터뷰를 통해 스타트업별 니즈를 파악하고, 오사카·일본·글로벌 네트워크와의 매칭 계획 수립 - 현장 프로그램 기간 동안 스타트업과의 정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상황별 맞춤 지원 제공 **· 현지 시장 통합 지원** - 프로그램 시작 시 일본 시장 진출 관련 지식 공유 세션 진행 - JETRO, 오사카 이노베이션 허브 등 일본 및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주요 기관·네트워크와의 연계 제공 - 지역 생태계 소개 및 추가 연계는 스타트업의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 **· 예상 성과** - 일본 시장 및 오사카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 - 현지 주요 플레이어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관계 형성 - 선발된 한국 스타트업이 오사카 내 협업 파트너를 발굴하고 지속적 협력 기반 마련 -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오피스 아워 등 현지 스타트업 관계자와의 협업 지속